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8. 28.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77호

제출연월일 : 2018. 8. 2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제8조제1항, 2017.5.8. 공포, 2018.1.1.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민이 받지 못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맞게 공중화장실 시설물 적용범위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 추가(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기타사항

(1)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2)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7. 31. ~ 2018. 8. 21.(20일 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물관리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모 미만 시설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남녀 공용인 화장실, 이용자가 해당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환 경 과 장	이 한 철
	수 계 관 리 팀 장	홍 성 문
	담 당 자	정 회 성 (746-5557)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 ---------- ---------- ---------- ---------- ----------.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모 미만 시설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남녀 공용인 화장실, 이용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환경과장 이 한 철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2017.11.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5.8.]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0.16.>[제목개정 2017.5.8.]

참고 2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대상 등 반영내용

연번	조례 위임사항	조례 위임사항 개정이유	조례 개정반영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제3조제1항, 2017.5.8. 공포, 2018.1.1.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여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상위 법령에 맞게 공중화장실 시설물 적용범위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 추가